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검 토 보 고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3227호)

2024. 11.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 병 철

목 차

I. 제안 및 회부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 개요	3
2. 국회동의 필요성	6
3. 주요내용 검토	8
4. 종합의견	12
※ 참고자료	14
1.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 참고사항	16
2. 우리나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현황	17
3. 한-모로코 사회보장 협정에 따른 재정효과	18
4. 한국과 모로코의 연금제도 비교	19
5. 국회동의사유(법제처 심사결과)	20
6.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 규정 형식 및 개요	24

I. 제안 및 회부

1. 제안자 : 정 부
2. 제안일자 : 2024. 08. 27.
3. 회부일자 : 2024. 08.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이 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모로코왕국의 사회보장 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사람에 대하여 사회보장 보험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한쪽 당사국에서 가입한 기간을 다른 쪽 당사국에서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인력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가. 이 협정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관한 법령과 모로코왕국의 기본연금제도에 관련된 법령에 적용됨(안 제2조).
- 나. 한쪽 계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되어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영

역에 파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음 36개월 동안은 그 한쪽 계약 당사자의 법령만이 계속해서 적용됨(안 제7조).

다. 각 계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급여 지급자격을 결정할 때 가입기간이 중복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을 고려함(안 제11조).

라. 한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하는 모든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동일 기간 내에 대신 제출된 경우 그 한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입법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예산조치 : 별첨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고

다. 체결경위

- 2017. 5. 우리측, 협정 체결 제의
- 2022. 11. 최종 문안 합의
- 2024. 5. 21. 제22회 국무회의 심의
- 2024. 6. 2. 서명(서울)

Ⅲ. 검토의견

1.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 개요

가. 사회보장협정의 개요

“사회보장협정”은 사회보장 분야의 협력을 규율하는 국가 간 조약으로 각국의 연금제도 등에서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가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하며, 협정 발효 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함.

일반적으로 사회보장협정은 사회보장제도의 이중 적용을 배제하여 보험료의 이중 납부를 방지하고 양국 간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개인의 급여수급권을 보호¹⁾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사회보장협정의 유형은 사회보장보험료의 이중부담 방지와 연금 가입기간의 합산을 함께 규정한 “가입기간 합산협정”과 가입기간 합산규정을 제외하고 사회보장보험료의 이중부담 방지만을 규정한 “보험료 면제협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금번 모로코왕국 정부와의 사회보장협정은 “가입기간 합산협정”에 해당함.

2024년 8월 현재 우리나라가 양자 간 체결하여 발효된 사회보장협정을 가입기간 합산협정과 보험료 면제협정으로 구분하면 다음 표와 같음.

1)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4년, 상대국에 10년을 가입한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우리나라 연금수급을 위한 기본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금수급권이 발생하지 아니함. 그러나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여 가입기간 합산이 이루어질 경우, 14년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연금수급권이 발생하게 됨.

<가입기간 합산협정과 보험료 면제협정>

(2024. 8월 기준)

구 분	국 가 명
가입기간 합산협정 (31개국)	캐나다(1999년 발효), 미국(2001년 발효), 독일(2003년 발효), 헝가리(2007년 발효), 프랑스(2007년 발효), 호주(2008년 발효), 체코(2008년 발효), 아일랜드(2009년 발효), 벨기에(2009년 발효), 폴란드(2010년 발효), 슬로바키아(2010년 발효), 불가리아(2010년 발효), 루마니아(2010년 발효), 오스트리아(2010년 발효), 덴마크(2011년 발효), 인도(2011년 발효), 스페인(2013년 발효), 튀르키예(2015년 발효), 스웨덴(2015년 발효), 브라질(2015년 발효), 핀란드(2017년 발효), 퀘벡(2017년 발효), 페루(2019년 발효), 룩셈부르크(2019년 발효), 슬로베니아(2019년 발효), 크로아티아(2019년 발효), 우루과이(2021년 발효), 뉴질랜드(2022년 발효), 베트남(2024년 발효), 필리핀(2024년 발효), 노르웨이(2024년 발효) ※ 아르헨티나 미발효
보험료 면제협정 (10개국)	이란(1978년 발효), 영국(2000년 발효), 네덜란드(2003년 발효), 일본(2005년 발효), 이탈리아(2005년 발효), 우즈베키스탄(2006년 발효), 몽골(2007년 발효), 중국(2013년 발효), 스위스(2015년 발효), 칠레(2017년 발효)

※자료: 외교부

2024년 8월 기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41개국과의 협정이 발효되었고, 2개국(아르헨티나, 모로코)과는 서명을 완료하였음.²⁾

나.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의 개요

총 25개 조문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하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은 대한민국과 모로코왕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자에 대해 사회보장 보험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다른 쪽 당사자의 사회보장제도에 가

2) ‘참고자료 2.우리나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현황’참조

입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여 급여수급권을 보장함으로써 양국 간 인력교류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고 투자 교류를 활성화하며 사회보장 당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양 계약당사국 간의 사회보장협정의 규정 형태는 다음과 같이 일반 규정, 적용 가능한 법령에 관한 규정, 급여에 관한 규정, 보칙규정, 경과 및 최종 규정 등 5개의 부(Parts)를 두고, 각 부에 관련 조문(Articles) 25개와 각 조에 관련 사항을 항(Paragraphs)으로 규정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 규정형식 및 개요³⁾>

부(Parts)	조(Articles)
제1부 일반규정	제1조(정의), 제2조(적용 가능한 법령), 제3조(인적 범위), 제4조(동등 대우), 제5조(급여의 국외 지급)
제2부 적용 가능한 법령에 관한 규정	제6조(일반 규정), 제7조(파견 근로자), 제8조(선원 및 항공승무원), 제9조(외교공무원, 영사관원 및 공무원), 제10조(예외)
제3부 급여에 관한 규정	제11조(가입기간의 합산) 제12조(급여의 산정) 제13조(한국에 관한 특별규정) 제14조(모로코에 관한 특별규정) 제15조(급여의 지급)
제4부 보칙규정	제16조(행정 약정), 제17조(정보 교환 및 상호 지원), 제18조(정보의 비밀 유지), 제19조(수수료 및 서류인증 면제), 제20조(소통 언어),

3) '참고자료 6.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 규정 형식 및 개요'참조

부(Parts)	조(Articles)
	제21조(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의 제출), 제22조(불일치의 해결)
제5부 경과 및 최종 규정	제23조(경과 규정), 제24조(발효), 제25조(존속 기간 및 종료)

2. 국회동의 필요성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 제11조제1항4)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급여 지급자격을 결정할 때 모로코 법령에 따른 보험 가입기간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연금법」 제17조⁵⁾ 및 제20조⁶⁾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임.

또한, 동 협정 제21조제1항7)은 한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

4) 제11조 가입기간의 합산

- 양 계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이 완성된 경우, 각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그 기관이 적용하는 법령에 따른 급여 지급자격을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자국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을 고려한다.
-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하 "가입기간"이라 한다)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은 가입기간에 산입하되,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자격을 다시 취득하면 다시 취득한 달을 중복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에 다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②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이하 생략)
- 제20조(가입기간의 합산) ①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전후(前後)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 제21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 제출
 - 한쪽 계약당사자의 법령의 목적상 그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었어야 하는 한쪽 계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의 결정 또는 지급에 관한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동일 기간 내에 대신 제출된 경우, 앞의 한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관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었어야 하는 급여의 결정 또는 지급에 관한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동일 기간 내에 대신 제출된 경우, 한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급여에 관한 국민연금공단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국민연금공단 등에 심사청구를 하도록 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제108조⁸⁾ 및 제110조⁹⁾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이라고 할 것임.

이와 같이 동 협정에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입법사항을 담고 있어 그 비준동의를 위하여 국회에 제출되었음.¹⁰⁾

8) 제108조(심사청구) ①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9) 제110조(재심사청구) ①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재심사청구서에 따라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

10) 보다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 5.국회동의사유(법제처 심사결과)’ 참조

3. 주요내용 검토

가. 적용 법령(협정 제2조)

일반적으로 사회보장 보험료의 이중부담 방지와 연금 가입기간의 합산을 함께 규정하는 사회보장협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는 「국민연금법」 등이 적용되고, 상대국에는 이에 상응하는 사회보장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데, 양국 간 적용법령의 범위가 일치하는 것이 균형적인 협정이라고 할 것임.

금번 모로코와의 협정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에 관련된 법령이, 모로코의 경우 기본연금제도에 관련된 법령이 적용되었음¹¹⁾.

나. 파견근로자 등의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협정 제7조~제9조)

사회보장협정은 사회보장제도의 이중적용을 배제하여 보험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금번 모로코와의 협정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36개월(3년)간 보험료의 이중 납부를 방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해진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파견이 계속되는 경우 양 계약당사국 간 상호 동의하에 36개월의 추가 기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11) 제2조 적용 가능한 법령

1. 이 협정은 다음의 법령에 적용된다.

가. 한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에 관련된 법령

나. 모로코에 대해서는 기본연금제도에 관련된 법령

<파견근로자의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기간 비교>

구 분	한-프랑스 사회보장협정	한-페루 사회보장협정	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	한-노르웨이 사회보장협정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
기본 면제기간	3년	4년	5년	5년	3년
추가 연장	양측 합의하에 3년까지 연장 가능	양측 합의하에 1년까지 연장 가능	양측 합의하에 3년까지 연장 가능	양국 상호 동의 하에 계속 적용 가능	양측 합의하에 3년까지 연장 가능

우리 기업들의 해외파견기간이 통상 3~5년이므로, 면제기간을 5년 이상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금번 모로코와의 협정은 기본 면제기간 3년, 추가연장 기간 3년으로 총 6년까지 면제 기간을 확보하였음.

협정이 발효되는 경우 파견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 납부 국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보험료 납부 국가>

구 분	형 태	적용국가
근로자	○ 모로코에서 근로하는 경우	
	- 모로코에서 고용되어 모로코에서 근로하는 사람	모 로 코
	- 한국에서 고용되어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모로코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양국 기관 합의 시 3년 추가 연장 가능)	한 국
	- 한국에서 고용되어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모로코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모 로 코
	○ 한국에서 근로하는 경우	
	-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한 국
	- 모로코에서 고용되어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양국 기관 합의 시 추가 3년 연장 가능)	모 로 코
	- 모로코에서 고용되어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한 국

구 분	형 태	적용국가
	○ 양국에서 근로하는 경우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양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한 국
	- 모로코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양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모 로 코
자영자	○ 모로코에서 자영하는 경우	
	- 모로코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모로코에서 자영하는 사람	모 로 코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모로코에서 자영하는 사람	한 국
	○ 한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한 국
	- 모로코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모 로 코
	○ 양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양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한 국
	- 모로코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양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모 로 코
기타	○ 양국에서 소득활동 하는 경우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한 쪽에서 자영, 다른 쪽에서 근로하는 사람	한 국
	- 모로코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한 쪽에서 자영, 다른 쪽에서 근로하는 사람	모 로 코

다. 연금 가입기간의 합산 및 급여의 산정(협정 제11조~제15조)

국외 장기체류자 등은 사회보장제도의 가입기간이 양국으로 분리되어 각각의 국가에서 가입기간을 따로 산정할 경우, 연금급여 수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연금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음.

이 경우 연금 가입기간 합산이 인정되는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여

양국 간 가입기간의 합산이 이루어진다면 이들의 연금급여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9년, 모로코에 2년을 가입한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우리나라의 연금수급을 위한 기본 가입기간인 10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우리나라의 연금급여수급권이 발생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지만,¹²⁾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여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하다면 총 11년의 가입기간이 인정되어 이 국민이 양국에 11년간 지급한 보험료에 상응하는 연금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됨.

또한, 금번 모로코와의 협정은 양국의 연금제도에 가입한 기간을 합산하여도 양국 연금수급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양국 연금제도의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조건으로 양국 모두와 가입기간 합산이 인정되는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제3국¹³⁾의 연금제도에 가입한 기간을 추가로 합산하는 규정¹⁴⁾을 포함하였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4년, 모로코에 4년, 캐나다에 7년을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우리나라와 모로코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도 우리나라와 모로코의 연금수급을 위한 기본 가입기간(우리나라: 10년, 모로코: 3,240일)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양국이 모두 캐나다와 가입기간 합산규정을 포함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한-모

12) 모로코의 경우 가입기간이 3,240일 이상인 60세 도달자에게 기여 수준에 따라 노령연금이 지급됨(‘참고자료 4.한국과 모로코의 연금제도 비교’ 참조).

13) 모로코의 사회보장협정 체결국은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독일, 리비아, 덴마크, 루마니아, 튀니지, 캐나다, 포르투갈, 퀘벡, 프랑스, 룩셈부르크 등 14개국임.

14) 제3국 연금제도 가입기간 합산규정은 체코와의 협정을 시작으로 불가리아, 루마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인도, 터키, 브라질, 스웨덴,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필리핀 등과의 협정에 존재함.

로코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캐나다에서의 가입기간까지 모두 합산이 가능하게 되어 3개국에서 15년간 지급한 보험료에 상응하는 연금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가 양국 모두에서 인정됨¹⁵⁾.

라. 협정에 따른 재정영향 분석

협정체결에 따라 파견근로자 면제액 규모는 우리 측 모로코 파견근로자 47명(2018년 기준)의 보험료 면제액이 연간 약 5,500만원, 모로코 측 우리나라 파견근로자 3명(2024년 기준)의 연금보험료 면제액이 연간 약 500만원으로 각각 추정되어 우리나라가 연간 5,000만원의 추정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¹⁶⁾

따라서 협정 체결에 따른 보험료의 이중납부 방지 및 사회보장제도 가입기간 합산으로 인한 재정효과는 우리나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됨.

4. 종합의견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은 종전의 대한민국과 모로코왕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사람에 대해 사회보장 보험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한 기간 및 양국이 모두 가입기간 합산협정을 체결한 제3국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국민의 연금급여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아프

15) 다만, 이는 요건만을 충족시킬 뿐이며, 실제 지불은 자국 가입기간에 따라 이루어짐.

16) '참고자료 3. 한-모로코 사회보장 협정에 따른 재정효과'참조

리카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사회보장협정¹⁷⁾임.

이에, 동 사회보장협정은 양국 간 인력 및 투자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국회의 동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266

17) 외교부는 동 협정이 아프리카 국가와의 최초의 사회보장협정이라는 점에서 협정의 지역적 저변 확대에 의의를 둠.

참 고 자 료

1.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 참고사항
2. 우리나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현황
3. 한-모로코 사회보장 협정에 따른 재정효과
4. 한국과 모로코의 연금제도 비교
5. 국회동의사유(법제처 심사결과)
6.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 규정 형식 및 개요

1.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 참고사항

가. 개 요

- 정식명칭 :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MOROCCO)
- 주요내용 : ▲사회보장 보험료의 이중납부 방지 및 ▲다른 쪽 당사국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한 기간을 합산

나. 기대효과

-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자에 대해 사회보장 보험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양국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한 기간을 합산하여 급여 수급권을 보장함으로써 양국 간 인력교류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고 투자 교류를 활성화

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 현황

- 2024년 8월 기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41개국과의 협정이 발효되었음.

라. 대한민국과 모로코의 관계

- 수출입동향 및 주요품목(2023년)
 - 교역액 : 5.7억불
 - 수출 : 3억9000만불(차량, 식물, 합성수지 등)
 - 수입 : 1억8000만불(의류, 기타광물, 어육 등)
- 교민 현황(2023): 약 362명, 국내 체류 모로코인 현황(2024): 642명

2. 우리나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현황

2024. 8월 기준

번호	국 가 명	서 명 일	발 효 일
1	이 란	1977.05.11.	1978.06.10.
2	캐나다	1997.01.10.	1999.05.01.
3	영 국	1999.04.20.	2000.08.01.
4	미 국	2000.03.13.	2001.04.01.
5	독 일	2000.03.10.	2003.01.01.
6	네덜란드	2002.07.03.	2003.10.01.
7	이탈리아	2000.03.03.	2005.04.01.
8	일 본	2004.02.17.	2005.04.01.
9	우즈베키스탄	2005.05.10.	2006.05.01.
10	몽 골	2006.05.08.	2007.03.01.
11	헝가리	2006.05.12.	2007.03.01.
12	프랑스	2004.12.06.	2007.06.01.
13	호 주	2006.12.06.	2008.10.01.
14	체 코	2007.12.14.	2008.11.01.
15	아일랜드	2007.10.31.	2009.01.01.
16	벨기에	2005.07.05.	2009.07.01.
17	슬로바키아	2009.02.09.	2010.03.01.
18	폴란드	2009.02.25.	2010.03.01.
19	불가리아	2008.10.30.	2010.03.01.
20	루마니아	2008.09.11.	2010.07.01.
21	오스트리아	2010.01.23.	2010.10.01.
22	덴마크	2010.03.11.	2011.09.01.
23	인 도	2010.10.19.	2011.11.01.
24	스페인	2011.07.14.	2013.04.01.
25	터 키	2012.08.01.	2015.06.01.
26	중 국	2012.10.29.	2013.01.16.
27	브라질	2012.11.22.	2015.11.01.
28	스웨덴	2013.09.09.	2015.06.01.
29	스위스	2014.01.20.	2015.06.01.
30	칠 레	2015.04.14.	2017.02.01.
31	핀란드	2015.09.09.	2017.02.01.
32	퀘 벡	2015.11.24.	2017.09.01.
33	페 루	2017.03.02.	2019.01.01.
34	슬로베니아	2018.02.20.	2019.10.01.
35	룩셈부르크	2018.03.01.	2019.09.01.
36	아르헨티나	2018.11.27.	미발효
37	크로아티아	2018.12.18.	2019.11.01.
38	우루과이	2019.07.09.	2021.11.01.
39	뉴질랜드	2019.10.29.	2022.03.01.
40	베트남	2021.12.14.	2024.01.01.
41	필리핀	2019.11.25.	2024.04.01.
42	노르웨이	2019.06.13.	2024.06.01.
43	모로코	2024.06.02.	미발효

※ 자료: 외교부, 2024년 8월 기준, 41개국 발효

3. 한-모로코 사회보장 협정에 따른 재정효과

- 2018. 12월 기준 모로코 파견 우리 근로자(47명)가 연간 납부하는 모로코 사회보험료는 약 5천 500만 원으로 추정되며, 협정 체결 시 이를 3년간(합의 시 연장 가능) 면제 가능
- 2024. 9월 기준 한국 파견 모로코 근로자(3명)가 연간 납부하는 우리 사회보험료는 약 500만 원으로 추정되며, 협정 체결 시 이를 3년간(합의 시 연장 가능) 면제 가능

협정 체결에 따른 보험료 면제액

■ 모로코 파견 한국인 근로자 재정부담 경감액 : 연간 55백만원(추정)

$$55\text{백만 원} = 47\text{명} \times 6,000\text{dirhams} \times 11.89\% \times 12\text{월} \times 137.05\text{원}$$

- 모로코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 수 : 47명(2018.12월 기준, Kotra 자료)
- 모로코 연금 월 소득 상한액 : 6,000dirhams
- 모로코 연금보험료율 : 11.89%
- 환율 : 137.05원(2024년 9월 기준, KEB하나은행 비고시환율)

■ 한국 파견 모로코 근로자 재정부담 경감액 : 연간 5백만원(추정)

$$5\text{백만 원} = 3\text{명} \times 1,507\text{천원} \times 9\% \times 12\text{월}$$

- 국민연금 가입중인 모로코 파견근로자 수 : 3명(2024.9월 기준)
- 국민연금에 가입한 모로코 파견근로자의 월 평균소득 : 1,507천원(2024.9월 기준)
- 대한민국 국민연금제도 보험료율 : 9%(근로자 4.5%, 사용자 4.5%)

※자료: 외교부

4. 한국과 모로코의 연금제도 비교

구분	한국	모로코
연혁	1988년에 처음 도입되고 1999년에 전 국민에 확대	1959년에 처음 도입되고 1972년에 현 사회보장제도 적용, 2017년에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 통과
목적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연령이 되거나(노령연금),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장애연금) 사망했을 때(유족연금),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돕는 소득보장제도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연령이 되거나(노령연금),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장애연금) 사망했을 때(유족연금),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돕는 소득보장제도
가입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전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해서는 별도 연금제도 운영	민간부문 임금 근로자, 협동조합 근로자, 공예가, 특정부문의 어부 당연적용 - 공무원 및 기타 특정 범주의 근로자는 특별제도 적용
보험료	개인의 소득에 비례하여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 (사용자 4.5%, 근로자 4.5%)	개인의 소득에 비례하여 소득의 11.8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 (사용자 7.93%, 근로자 3.96%)
연금액 지급대상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63세(점진적으로 65세) 도달자에게 노령연금 지급	가입기간 3,240일, 60세 도달자에게 기여 수준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근로 중단 필수)

5. 국회동의사유(법제처 심사결과)

가. 주요 내용

- 이 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모로코왕국의 사회보장 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사람에 대하여 사회보장 보험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양국의 사회보장 제도에 가입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국 간 인력교류에 대한 장애를 완화하고 투자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나. 주요 검토사항

-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는바,
 - 이 협정안의 내용을 고려할 때, 특히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검토 대상임.

다.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해당 여부

- 협정안 제11조제1항에서는 각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그 기관이 적용하는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필요한 경

우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자국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을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한쪽 계약당사자의 법령이 특정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가입기간이 특정 직업에서 완성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다른 쪽 계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직업에서 완성되거나 동등하게 인정된 가입기간만이 이러한 급여 수급권의 인정을 위하여 합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하고,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전후(前後)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제17조 및 제20조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임.
- 또한, 협정안 제21조제1항에서는 한쪽 계약당사자의 법령의 목적상 그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었어야 하는 한쪽 계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의 결정 또는 지급에 관한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동일 기간 내에 대신 제출된 경우, 앞의 한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는 급여에 관한 국민연금공단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국민연금공단 등에 심사청구를 하도록 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제108조 및 제110조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임.

- 이와 같이 이 협정안은 국내 법률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내 법률을 변경·수정하는 효과를 초래하므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협정안	관계 법령
제11조 가입기간의 합산 1. 양 계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이 완성된 경우, <u>각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그 기관이 적용하는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자국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을 고려한다.</u> 2. <u>한쪽 계약당사자의 법령이 특정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가입기간이 특정 직업에서 완성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다른 쪽 계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직업에서 완성되거나 동등하게 인정된 가입기간만이 이러한 급여 수급권의 인정을 위하여 합산된다.</u> 3. (생략) 제21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 제출 1. <u>한쪽 계약당사자의 법령의 목적상 그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었어야 하는 한쪽 체</u>	「국민연금법」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하 "가입기간"이라 한다)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u>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u>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은 가입기간에 산입하되,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자격을 다시 취득하면 다시 취득한 달을 중복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 ⑥ (생략) 제20조(가입기간의 합산) ① <u>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전후(前後)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u> ② (생략) 제108조(심사청구) ①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u>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u>

<u>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의 결정 또는 지급에 관한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동일 기간 내에 대신 제출된 경우, 앞의 한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u> 2. 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10조(재심사청구) ①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재심사청구서에 따라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생략)
---	--

라. 검토의견

-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협정안은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으로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으로 판단됨.

6.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 규정 형식 및 개요

구분		규정내용
제1부 일반규정	제1조 (정의)	■ 협정에 사용되는 ‘영역’, ‘국민’, ‘법령’, ‘권한 있는 당국’, ‘실무기관’ 등에 대한 용어 정의
	제2조 (적용 가능한 법령)	■ 협정이 적용되는 체약당사국 법령 한정 ■ 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쪽 당사자와 제3자 간 사회보장협정 미적용 명시 등
	제3조 (인적 범위)	■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았던 모든 자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적용 법령에서 정의하는 그 피부양자와 유족에게 적용
	제4조 (동등 대우)	■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는 체약당사자의 국민, 피부양자, 유족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할 때 그 체약당사자의 국민과 동등한 대우 등
	제5조 (급여의 국외 지급)	■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는 지급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더라도 동일하게 지급되며,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 밖에 거주하더라도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과 동일하게 지급
제2부 적용 가능한 법령에 관한 규정	제6조 (일반 규정)	■ 이 부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피고용자는 그 근로와 관련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만 적용 ■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통상 거주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또는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자영업자는 그 근로와 관련하여 거주하는 체약당사자의 법령만 적용 ■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되거나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면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된 자는 그 또는 그녀가 통상 거주하는 영역의 체약당사자의 법령만 적용
	제7조 (파견 근로자)	■ 36개월간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 적용(보험료 이 중납부 방지) ■ 양쪽 체약당사자 합의 시 위 규정 연장가능(36개월)
	제8조 (선원 및 항공 승무원)	■ 선박 승무원의 관리자 또는 구성원은 그 사람이 통상 거주하는 영역의 법령 적용

구분		규정내용
		■ 항공승무원을 고용한 기업의 본사(지사 또는 상주 사무소)가 소재하는 영역의 법령 적용 등
	제9조 영사관원 및 공무원)	■ 이 협정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없음을 규정
	제10조 (예외)	■ 특정한 조건으로 특정한 자 또는 특정 범주의 자에 관하여, 제2부의 규정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수 있음
제3부 급여에 관한 규정	제11조 (가입기간의 합산)	■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완성되었을 경우, 필요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자국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가입기간)을 고려 ■ 특수직종에 대한 특별 규정 ■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기초하여 급여 지급권을 갖추지 못할 경우, 양 체약당사자와 가입기간 합산을 규정하는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제3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을 고려
	제12조 (급여의 산정)	■ 연금산정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결정 등
	제13조 (한국에 관한 특별 규정)	■ 한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나, 한국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한국 법령에 따른 노령 급여 등의 자격이 없는 경우, 모로코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을 고려 ■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고려된 총 가입기간이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되었을 경우 그 자에게 지급되었을 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을 먼저 산정하고, 한국 법령에 따라 가입되었던 기간 동안 그 자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고려 ■ 한국 법령에 따라 고려된 가입기간과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고려된 총 가입기간 간의 비율에 비례하여 한국 법령에 따라 지급될 부분

구분		규정내용
		급여를 산정 ■ 모로코 국민에 대한 반환일시금의 지급은 한국 법령에 따라 결정
	제14조 (모로코에 관한 특별 규정)	■ 양 계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모든 가입 기간이 그 설정일에 모로코의 법령에 따라 완성 되었을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이론상 급여액을 산정 ■ 양 계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총 가입기간에 대하여 모로코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의 비율에 따른 실제 급여액을 산정
	제15조 (급여의 지급)	■ 한쪽 계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발생한 급여는 그 계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지급 규정 ■ 한쪽 계약당사국은 그 계약당사국의 통화로 지급 가능성을 규정
제4부 보칙규정	제16조(행정 약정), 제17조(정보 교환 및 상호 지원), 제18조(정보의 비밀 유지), 제19조(수수료 및 서류인증 면제), 제20조(소통 언어), 제21조(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의 제출), 제22조(불일치의 해결)	
제5부 경과 및 최종 규정	제23조(경과 규정), 제24조(발효), 제25조(존속 기간 및 종료)	